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
----------	----

제출연월일 : 2005. 11. 29.

제출자 :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상 개정된 용어대로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을 명확히 함(안 제2조의 9)

-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위촉대상 (안 제7조의 2)

- 임무 :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 처리 감시활동
- 위촉대상 : 환경미화원, 환경단체 회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10 10. ~ 10. 31)결과 제출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을 “「폐기물관리법」” 으로 한다.

제2조제8호중 “별표 4 제3호라목” 을 “제9조의 2” 로하고, 같은호중
“200제곱미터” 를 “250제곱미터” 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명예환경감시원)①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 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미화원, 환경단체 회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명예환경감시원 위촉·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를 각각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생략 1~7생략 8.“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u>별표 4 제3호</u>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객석면적이 <u>200제곱미터</u>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p> <p><신설></p>	<p>제2조(정의)생략 1~7생략 8.----- -----<u>제9조의 2</u> 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객석면적이 <u>250제곱미터</u> ----- ----- -----.</p> <p><u>제7조의 2(명예환경감시원)①</u>시장은 <u>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u></p> <p><u>②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미화원, 환경단체 회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u>③명예환경감시원 위촉·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관계법령 발취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을 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